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8월 1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삼성클래식아세안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2. 7.13
3. 정정 사유
 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VaR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 -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
4. 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대상	가. 투자 대상 (추 가) 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※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2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 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	가. 투자 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 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 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 용합니다. 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(삭 제)

[illegible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	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)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합니다. ②신탁업자의 변경(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)(추 가) ⑥집합투자업자의 합병·분할·분할합병,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(추 가) (2) 수시공시 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결정 및 그 사유 (추 가) 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7)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	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)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합니다. ②신탁업자의 변경(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) 다만,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,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 ⑥집합투자업자의 합병·분할·분할합병,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손실 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 (2) 수시공시 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결정 및 그 사유 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 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.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.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)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(추 가)	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(법시 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·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)